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목 차>

1. 압류·회수 등 거부 관련 행정처분 기준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 자	이름	노지영
	담당부서 (과)	수입식품정책과		직급	보건연구사
	국장	김유미		연락처	043-719-2159
	과장	김 솔		이메일	NJY94@mail.go.kr

21.8.26. 작성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김유미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압류·회수 등 거부 관련 행정처분 기준 신설								
	2.규제조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3.위임법령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9.17. ~ 2021.10.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등 타 식품관계 법률과 달리 수입 영업자가 영업소 출입·검사·수거 및 회수 폐기 등을 거부한 경우 처분부과 근거 미비 ⇒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해(危害) 방지 및 유통단계 행정질서 유지 위해 영업자 법규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 등 법령정비 필요 								
	7.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기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자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출입·수거·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압류 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강제 회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8.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규제집단)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년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2">유 형</th> <th>업소수</th> </tr> <tr> <td style="text-align: left;">피규제자</td> <td style="text-align: left;">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td> <td>57,269</td> </tr> </table>			유 형		업소수	피규제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57,269
	유 형		업소수							
피규제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57,269								
9.규제목표	○ 원활한 출입·검사·수거 및 위해식품등 회수·압류 및 폐기									
규제의 적정성	10.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등록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등록취소 등) ① ----- ----- ----- ----- ----- ----- -----
1. ~ 6. (생 략) <신 설>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7.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27조, 제28조, 「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제3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3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제1항·제2항----- -----
8. ~ 10. (생 략) <신 설>	8. ~ 10. (현행과 같음) 11.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준용되는 「식품위생법」 제45조제1

② ~ ④ (생 략)	항을 포함한다)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른 회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식품위생법」 등 타 식품관계 법률과 달리 수입 영업자가 영업소 출입·검사 및 회수·폐기 등을 거부한 경우 처분부과 근거 미비

⇒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해(危害) 방지 및 유통단계 행정질서 유지 위해 **영업자 법규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 등 법령정비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근거

- 규제 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행정처분 기준 신설
	내용	· 출입·검사·수거 및 회수·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회수 조치를 하지 않거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처분 기준 마련

- 규제 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출입·검사·수거 및 회수·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출입·수거·검사 및 위해식품등 회수·압류·폐기가 가능함	· 출입·검사·수거 및 회수·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할 예정임

3. 규제목표

- 행정처분 규정 마련으로 **원활한 출입·수거·검사 및 회수·압류·폐기 가능**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동 규제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출입·수거·검사 및 회수·압류·폐기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시에 대한 행정처분을 마련한 것으로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유사 입법사례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규정한 것임
-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정책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동 시행규칙 개정 공포 후 1년 후로 시행하여 제도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기술기준이나 시험·검사·인증 등에 관련된 법령 등의 제·개정시 기존 유사제도와 중복성 여부 등 평가)
「수입식품법」에서 규정된 행정처분 제재근거가 없어 신설되는 조문으로 기존 제도와의 중복 가능성 없음
- **경쟁영향평가**(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평가가 필요한 경우_공정거래위원회 검토)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평가가 필요한 경우_중소벤처기업부 검토)**

출입 수거 검사 또는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폐기·압류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임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명백하게 진입제한 또는 경쟁제한적 규제인지, 신산업 분야에 있어 시장기능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았는지 검토)**

동 규제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출입·수거·검사 또는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폐기·압류를 거부·방해·기피하는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제의 준수 여부 판단을 민간재량에 맡기는 방식의 시장유인적 설계는 적절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5년 범위내에서 설정하며, 미설정시 설정이 곤란한 사유 제시)**

동 규제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출입·수거·검사 또는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폐기·압류를 거부·방해·기피하는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간을 정하여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바 규제의 지속 유지 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 미적용 시 그 사유 제시)**

해당없음

		한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함
네거티브 리스트		동 규제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출입·수거·검사 또는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폐기·압류를 거부·방해·기피하는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네거티브 규제 적용이 불가함
사후 평가관리		동 규제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출입·수거·검사 또는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폐기·압류를 거부·방해·기피하는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후 평가관리 규제 적용이 불가함
규제 샌드박스		동 규제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출입·수거·검사 또는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폐기·압류를 거부·방해·기피하는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은 불가함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동 규제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출입·수거·검사 또는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폐기·압류를 거부·방해·기피하는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함
유연한 분류 체계		동 규제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출입·수거·검사 또는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폐기·압류를 거부·방해·기피하는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제 대상에 대

3. 유사 입법사례

1) 타법사례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1. 6. 7., 2013. 3. 23., 2013. 7. 30., 2014. 5. 28., 2015. 2. 3., 2015. 5. 18., 2016. 2. 3., 2018. 3. 13., 2018. 12. 11., 2019. 4. 30.>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삭제 <2018. 3. 13.>
 3.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4의2. 삭제 <2015. 2. 3.>
5.~13. (생략)
14. 제45조제1항 전단에 따른 회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4의2.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8. 제7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2., 2012. 2. 22., 2013. 3. 23., 2013. 7. 30., 2015. 2. 3., 2016. 2. 3., 2017. 10. 24., 2018. 3. 13., 2020. 4. 7.>

1.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제3항, 제9조의3제7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5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5항·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22조제3항 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축산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6. 「축산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출입·수거·검사 또는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폐기·압류를 거부·방해·기피하는 영업자는 극히 드물게 생기는 상황으로, 피규제자가 충분히 해당 규제를 준수할 수 있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에게 사전 홍보 등을 통해 널리 알려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기간을 두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이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재정 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16.2) 수입식품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그간 식품위생법 등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입업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으로 일원화, 이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 마련
- (19.3)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 수입식품등의 표시 광고와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 등의 관련 조문 정비

2. 향후 평가계획

- 합리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 하겠음

3. 종합결론

- 입법예고를 통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개정(안)을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출입·수거·검사 또는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폐기·압류를 거부·방해·기피하는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하는 것으로 원활한 출입·수거·검사 등 가능